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5. 12 선고 2021재가단2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 등]

전 문

원고(재심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B소중친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이나연

변 론 종 결 2023. 4. 21.

판 결 선 고 2023. 5. 12.

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1. 24. 선고 2021가단6968 판결

주 문

1. 원고(재심원고)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6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사건에 관하여 2021. 11. 24.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(재심피고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는 여주시 C 답 572㎡에 대하여 2017. 8. 17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9. 10. 23. 말소된 2013. 7. 16. 접수 제22734호 등기를 원고(재심원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 앞으로 회복등기 하라.

이 유

1. 사건의 경과

가. 피고 소유이던 여주시 C 답 572㎡에 관하여 2013. 6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. 7. 16.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의 형 D였다.

나. 피고는 2015. 12. 20. 임시총회에서 E을 대표자로 선출한 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, 위 토지의 처분에 관한 피고의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(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6764)를 제기하여 2017. 8. 17. 인용 판결(공시송달)을 선고받았다.

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(수원지방법원 2017나77299) 위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, 피고의 2018. 8. 18. 임시총회에서 E이 대표자로 다시 선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019. 1. 10.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상고도 2019. 5. 30. 기각되어(대법원 2019다213146)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9. 10. 23. 위 원고 앞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.

다. 한편 위 2015. 12. 20. 임시총회 결의로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D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49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여 2018. 5. 30. 피고가 위 임시총회에서 E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8나2029328)에서 패소하게 되자(위 2018. 8. 18.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음이 그 이유로 보인다), 다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164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여 2020. 4. 24. 피고가 위 2018. 8. 18. 임시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(수원고등법원 2020나14273) 2021. 3. 31.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라. 원고는 적법한 재심기간 내에 위 2016가단56764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6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 등을

청구하였으나, 2021. 11. 24. 위 말소등기의 원인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6764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표권 흠결은 그 재심사유가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(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).

마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억울하게 말소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위 2021가단6968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판결에서 대표권 흠결은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이 부분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므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.

3. 판단

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.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, 전체적인 주장 취지로 볼 때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대표자(E)가 선출된 피고의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표권이 없음(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)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. (이 점에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)

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,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(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6764 판결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인 위 2016가단56764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어야만

하고,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(위 2021가단6968)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았더라도 그 재심대상판결을 달리하여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염원섭